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잠정조치 기간 연장, 법원의 잠정조치 이행실태 점검 근거 마련
및 스톱킹범죄 법정형 상향〉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18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9. 09.
3. 회 부 일 : 2024. 09. 10.

I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되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잠정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스토킹행위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는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피해자가 일상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스토킹범죄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나. 법원이 잠정조치 집행자에게 잠정조치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안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①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를 상향하고 ② 법원이 잠정조치 집행자에게 잠정조치 이행실태 조사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임(안 제9조제7항, 제10조의2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생략)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	⑦ ----- ----- <u>6개월</u> ----- ----- -----. ----- ----- ----- ----- -----세 차례 -----

현행	개정안
에서 연장할 수 있다. <u><신 설></u>	-----. 제10조의2(이행실태의 조사) ① <u>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u> <u>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u> <u>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u> <u>잠정조치의 이행실태에 대하여</u> <u>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u> <u>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u> <u>수 있다.</u> ② <u>법원은 잠정조치를 받은 스</u> <u>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u> <u>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u> <u>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u> <u>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u>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 범 죄를 저지른 사람은 <u>3년</u> 이하 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u>5</u> <u>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 -----<u>5년</u>----- -----<u>5천만원</u>----- -----. ② ----- ----- -----<u>7</u> <u>년</u>-----<u>7천만원</u> -----.

2. 검토의견

가. 잠정조치 기간 및 연장횟수 상향

□ 현행법 제9조¹⁾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실시되는 조치로서, 그 유형으로는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하 “전자장치 부착”)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고,
- 조치 기간은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②~④) 3개월,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⑤)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

1)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 개정안은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의 기본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고, 각 1회당 연장 가능 기간의 범위를 현행(3개월)대로 유지하되 연장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유형의 잠정조치가 가능한 최장 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음.
- 잠정조치의 기간 및 연장 횟수 등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스토킹범죄는 집착적 성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므로 초범이나 경미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잠정조치 유형 중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강하게 차단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조치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현행보다는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불구속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접금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바,
- 현행 잠정조치의 최장기간은 2023. 7. 11. 법 개정(2024. 1. 12. 시행)에 따라 종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 것으로,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았고 스토킹범죄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이 3~4개월 또는 5~6개월인 점을 비추어 보면²⁾ 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 한나라,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2., p.397

나. 법원에 대한 잠정조치 집행자의 이행실태 보고 근거 등 신설

□ 현행법 제9조³⁾ 및 제10조⁴⁾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고,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 법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이하 “잠정조치 집행자”)에게 잠정조치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음.

○ 개정안은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스토킹행위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의 잠정조치 이행여부 점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잠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피해자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법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지 여부는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 효과, 전자장치 부착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만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4)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현행법은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⁵⁾,
-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잠정조치 집행자를 통해 접근금지 결정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검사에게 통보함으로써 접근금지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형사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스토킹범죄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2023. 7. 11. 법 개정(2024. 1. 12. 시행)으로 그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 이행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일정 부분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이행실태 점검을 수행하는 잠정조치 집행대상자에 교정직공무원과 보호관찰관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들은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잠정조치 집행 후 해당 스토킹행위자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⁶⁾에 따라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시설의

5)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2조(교정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이하 이 항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순회점검 등을 통해 구치소 내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4항7)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거나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있음.

□ 유사입법례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⁹⁾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
- 7)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2.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9)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규정하면서 법원이 가정보호 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임시 보호명령 및 피해자(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스토킹범죄 법정형 상향

□ 현행법은 기본 스토킹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⁰⁾.

○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기본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 등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보다는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범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예방·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를 통해 그 범죄 자체로서 사람의 신체

10)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상 상해죄¹¹⁾(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¹²⁾(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체포·감금죄¹³⁾(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 수준과 비교할 때, 개정안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벌칙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70

-
- 11)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